

2025



리플렛 바로가기



신청페이지 바로가기
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
행정안전부 지원 무료교육/심폐소생술 실습포함



아이먼저



행정안전부



한국보육진흥원

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?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*에 따르면, 어린이집·유치원·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(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.

* 법 제16조~17조, 동법 시행령 제9조

무료교육대상

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(연간 10만명)

* 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 종사자 중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,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

*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(어린이집 등) 종사자,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(읍·면지역)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

※ 어린이이용시설 유형(총 22개)

법률 규정(제3조)	시행령 규정(제2조, 별표 1)
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(매장면적 1만㎡ 이상) ⑧ 유원시설(연면적 1만㎡ 이상) ⑨ 전문체육시설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 ⑩ 공연장(객석 1천석 이상) ⑪ 박물관(연면적 1만㎡ 이상) ⑫ 미술관(연면적 1만㎡ 이상)	① 외국교육기관 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 ② 과학관(연면적 1만㎡ 이상) ③ 공공도서관(건물면적 264㎡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 ⑨ 외국인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 ⑩ 대안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교육기간

2025. 3. ~ 12.

* 교육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교육안내 및 신청

한국보육진흥원·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(<https://lms.educare.or.kr> 탑재)

* 이론교육(2시간)만 수강 시, 별도 이수증 발급 가능

교육 내용

이론 2시간(온라인 수강)	실습 2시간(지역별 집합교육 참석)
• 응급상황 행동요령 •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	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

* 외국인종사자 대상 영어버전, 농아인 대상 수어버전 탑재

* 이론교재(PDF) 다국적어(베트남어, 중국어) 버전 탑재
(한국보육진흥원·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<https://lms.educare.or.kr> 탑재)

교육 문의



한국보육진흥원 1661-5666